|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 | | | | | | | |
| 전시회 부스 사용 신청서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정보** | | | | | | | | | |
| **구분** | | **국문** | | | | **영문** | | | |
| **회사명** | |  | | | |  | | | |
| **주소** | |  | | | |  | | | |
| **담당자** | | 성 명 | |  | | | | | |
| 부서/직책 | |  | | | | | |
| **연락처** | | 연 락 처 | |  | | | | | |
| 휴 대 폰 | |  | | | | | |
| Fax | |  | | | | | |
| E-mail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
| **전시품 및**  **제품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비 정보** | | | | | | | | | |
| **구 분** | | | **금 액** | | **신청수량** | | | **비 고** | |
| 전시장 | **□독립부스** | | \5,500,000원 / 9㎡ | | ( ) 9㎡ | | |  | |
| **□기본부스** | | \5,500,000원 / 9㎡ | | ( ) 9㎡ | | |  | |
| 야외 전시장 | **□몽골텐트** | | \3,300,000원 / 9㎡ | | ( ) 9㎡ | | |  | |
| ※ 상기 금액은 V.A.T 포함 입니다. | | | | | | | | | |
| **▢ 계좌 정보** | | | | | | | | | |
| **총 계** | 금 원 | | | | | | | | |
| **은행송금** |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 농협은행 / 301-0182-3937-11 | | | | | | | | |
| · 참가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반드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부스 사용비 송금 후 이체 확인증(회사명, 담당자명)을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금 시 수수료는 전시 참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부대설비의 사용신청과 사용료는 추후 배포될 참가업체 매뉴얼을 참고바랍니다.  · 전시회 참가규정에 동의하고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에 위와 같이 참가 신청합니다. | | | | | | | | | |
|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무국 (전시 담당자 : 변익수 차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215호  TEL. 064)702-1580 FAX. 064)702-1576  E-mail. exhibition@ievexpo.org Website: www.ievexpo.org | | | | | | | 2021년 월 일 | | |
| 회사명 : | |  |
| 대표자 : | | (인)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시회 참가규정

**제 1 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하 The 8thIEVE)를 말한다.

3. “주최자”라 함은 사단법인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하 IEVE) 를 말한다.

**제 2 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전시면적 / 부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예정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참가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 5조의 계약금을 납입함으로써 본 전시회 참가규정에 관하여 서로 합의하고 약정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1. 주최자는 신청 접수 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 전시자 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 설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경은 주관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 조 전시실/부스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전시자의부스(booth)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주최자는 전시회의 운영 및 경비상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4.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등으로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납입조건**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참가 신청서 제출시 주최자에게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부스위치 배정 완료 후 7일 이내로 납입해야 한다.

**제 6 조 해약**

전시자가 주최자의 승인 없이 약정한 전시 면적의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하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최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단, 주최자의 승인아래 전시자가 전시참여를 2021년 7월 30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하되, 부스 참가 조건 아래 주최자가 제공한 홍보서비스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반환한다. 2021년 7월 30일 이후에 취소를 하는 경우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전시자가 제5조 납입조건을 불성실 이행했을 경우, 주최자는 이미 납입된 참가비를 전시자에게 반환하지 않을뿐더러 전시 면적도 배정되지 않는다.

**제 7 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장소가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8 조 전시 및 전시품 진열**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 부스내에 전시자의 비용으로 지정기간 안에 설치, 전시품의 반입 및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 9 조 전시품 및 설치물반출**

전시자는 지정 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설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가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위험 부담 및 보험**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설치기간, 전시기간 및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 내 설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등이 발생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 물품 등에 대한 보험 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 조 안전관리규정 및 방화규정의 준수**

1. 전시부스내의 설치물 및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ICC 안전관리규정 및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3. 전시자는 ICC JEJU 안전관리규정 및 소방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를 사용하는 전열기구의 사용을 일체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기전열기구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주최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약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본 전시회 참가규정 약정과 관련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양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